

第59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2月3日(月) 午前10時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文化藝術振興諮詢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案)
7. 서울特別市城北區無許可建物整備事業에 대한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城北區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文化藝術振興諮詢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5.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6.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7. 서울特別市城北區無許可建物整備事業에 대한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 3面
8. 서울特別市城北區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10時09分 開議)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事務局長 李東湜 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다섯건의 조례안과 구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을 심사한 결과, 성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성북구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보상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두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
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城北區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
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城北區文化藝術振興諮詢委員會
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11分)

○議長 趙基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안결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委員長 安傑瑢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안결용 위원장입니다.

제59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기획실 소관 3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1. 21일 행정부측이 제출하여 '97. 1.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성북구직제개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구성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 간사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이에 맞게 위원의 구성 및 간사가 일부 개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 1. 21 행정부측이 제출하여 '97. 1.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성북구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분장증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전 민원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사무로 변경되어, 본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에 민원담당관실장이 감사담당관으로, 서기에 민원담당관실 종합민원계장이 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계장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이에 맞게 간사 및 서기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 1. 21일 행정부측이 제출하여 '97. 1.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실장을 신설하고 간사와 서기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96. 11. 29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이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이나 조례 제3조 제3항의 내용이 명료하지 못하여 당연직인 기획실장의 서열을 구의원 다음에 배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네, 행정위원회 안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
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
見聽取(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18分)

○議長 趙基燦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
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
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
(안),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진권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
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
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幹事 金振權 의원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진권의원입니다.

제59회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趙基燦 네, 행정위원회 김진권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행정기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
장의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特別市城北區無許可建物整備事業에대
한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
長 提出)

8. 서울特別市城北區駐車場設置 및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26分)

○議長 趙基燦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
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
조례증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
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지역개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開發委員會委員長 鄭昌萬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위원장 정창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59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趙基燦 네,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화석의원님.

(○徐化錫議員 의석에서－간단하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徐化錫議員 서화석의원입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된 것이 지난 '95년 12월 6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정된 것이 1년 1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이게 다소 늦은 것입니까? 과연 이 늦은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이 안건을 심사한 정창만 지역개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地域開發委員會委員長 鄭昌萬 서화석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시킨 것은 구청에서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지금와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都市整備局長 朴石安 도시정비국장이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님 설명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이 바뀌고나서 시행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위조례가 나와야지 자치구 조례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 기준안이 나

온 것이 금년 1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건이 이제 상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모법은 '95년 12월달에 되었지만 시행령은 '96년에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작년에 되어 가지고 자치구 조례 준칙안이 나온 것은 금년 1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서화석의원님, 이해되었습니까?

(○徐化錫議員 의석에서－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김영기의원님,

(○金鈴基議員 의석에서－신상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요? 나오십시오.

(○羅光洙議員 의석에서－의장님, 공무원들은 퇴청시키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議長 趙基燦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니까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金鈴基議員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과 동

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암1동 출신 지역개발위원회 김영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일의 신상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당한 불명예스런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하고 이를 원만히 해결, 본의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우리 구의회가 더욱 성숙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28일 구의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회의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속에서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나선 구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동료의원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성북구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최고의 전당인 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는 오히려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를 보내면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는 정기회 마지막날 한 의원의 추태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되짚어 보면 정기회 마지막날 본회의서 권혁기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자, 나광수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던 바 류성열 당시 의장은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니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 우선인데 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자 김영기의원이 진행자냐고 하며 당시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의장의 판단으로 나광수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나의원의 발언으로 안전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권혁기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려 나온 권혁기 당시 시민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는 하지 않고 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로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기에 “의장님은 심사결과보고와 관계없는 다른 방향의 발언은 경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본의원이

의석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류성열 당시 의장은 또다시 김영기의원이 진행을 하느냐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제지를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본회의장이 소란해지면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권혁기의원이 단상에서 “오줌 뚝 끗가리는 김영기의원은 가만히 있어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석에 가서 앉은 권혁기의원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별해서 하세요”라고 말하자 또 “오줌 뚝 끗가리는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고 수차례 모욕을 당하여 격분하였으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욕을 당한 후였지만, 본의원은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후반기 의장단의 구성으로 새출발하는 마당에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문제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고나서 얼마지나지 않은 어느날 아침에 구청의 모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인즉, 권혁기의원이 본의원이 살고 있는 건물이 신축된지 얼마안됐는데 준공과 관련된 민원과 준공허가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소속인 권혁기의원이 도대체 의정활동과는 상관도 없는 특정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 특정인이 일반 주민도 아닌 바로 동료의원이라는 것은 자료의 내용을 면나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요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북구 의원이 성북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정활동과 국한되어서 요구할 때만이 정당한 자료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동료의원의 건축준공 관련서류가 권혁기의원의 의정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회 의원이 이런식으

로 의정활동을 해 나간다면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구의회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해도 좋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과연 지방의원이 필요한가라는 원초적인 지적을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받게 될지 모릅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들어서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서 뽑힌 사람들이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낮을 바꾸고 개인적인 이해에 집착, 자기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한다면 정말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으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많은 동료의원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직면해서 이는 본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하고 의원님들의 혁명하신 판단으로 본의원과 우리 의회가 당한 불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혁기의원이 아이러니칼하게도 본의원을 오줌통 못가리는 의원이라며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고나서 큰소리로 읊었던 의원윤리강령에는 우리 의원은 구민을 위한 대표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지키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줌 통을 못가린다는 것은 망령이 났다거나 저를 한두 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저를 주민의 대표로 선출한 우리 종암1동 주민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이며, 또한 여기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구행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동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본의원도 나름대로의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구의회에 불명예를 남긴 당사자에게 먼저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공개사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참담한 심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의원과 같은 일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하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며, 아울러 의장님께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김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장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성숙되고 가장 모범되고 해야 할 이 구민의 전당에서 이러한 신상발언이 나오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어서 참 통탄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추후로 논의를 하고 성숙된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散會)

○出席議員 36人

| | | |
|-----|-----|-----|
| 洪性濤 | 朴景錫 | 任泰根 |
| 申宗鉉 | 文京周 | 金東殷 |
| 金順權 | 宋夏星 | 柳興先 |
| 吳榮作 | 尹晚丸 | 金光植 |
| 金榮植 | 李大一 | 高允根 |
| 徐榮振 | 徐化錫 | 金甲濟 |
| 俞鎮武 | 金鈴基 | 金振烈 |
| 李鍊炯 | 崔東煥 | 柳成永 |
| 羅光洙 | 趙基燦 | 丘在永 |
| 尹弘老 | 李龍燮 | 金珉奭 |
| 安傑瑢 | 金壽榮 | 崔桂洛 |
| 李承魯 | 鄭昌萬 | 金南孝 |

○缺席委員 6人

| | | | |
|-------|-------|-----|-----|
| 崔 哲 模 | 許 東 翼 | 權 赫 | 騏 俊 |
| 安 敦 洙 | 辛 在 福 | 朴 時 | |

○參席専門委員

| | | |
|---------|---|---------|
| 專 門 委 員 | 員 | 永 根 吉 |
| 專 門 委 員 | 員 | 金 鎭 石 洛 |
| 專 門 委 員 | 員 | 崔 林 |

○參席公務員

| | | | |
|-----------|---|-----|-------|
| 區 廳 | 長 | 浩 錫 | 朱 國 鈜 |
| 副 區 廳 | 長 | 沈 英 | 安 淑 |
| 企 劃 務 局 | 長 | 金 長 | 希 宰 |
| 總 市 民 局 | 長 | 金 煥 | 宰 泰 |
| 都 市 管 理 局 | 長 | 尹 朴 | 佑 淳 |
| 建 設 交 通 局 | 長 | 朴 曹 | 彬 鍊 |
| 保 健 所 | 長 | 宋 宋 | |
| 企 劃 豫 算 檢 | 官 | 姜 安 | |
| 監 察 檢 算 檢 | 官 | 李 任 | |
| 文 化 公 報 檢 | 官 | 宋 | |
| 總 務 課 | 長 | | |
| 住 宅 課 | 長 | | |
| 交 通 行 政 課 | 長 | | |